

2021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(舊공공근로) 사업 참여자 모집

서울특별시(본청, 사업소)에서는 2021년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0. 11. 16.

서울특별시

1. 신청기간 : 2019.11.17(화) ~ 12.4(금)[14일간] 09:00~18:00
2. 사업기간 : 2021.01.11. ~ 06.30.[5개월 19일간]
3. 모집인원 : 서울시 529명, 서울시설공단 100명
4. 신청장소 : 주소지 동주민센터
5. 사업구분
 - 일반사업 : 114개 사업 454명 선발
 - 청년사업 : 39개 사업 75명 선발
 - 서울시설공단: 10개 사업, 100명 선발

※ 청년 사업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(1982. 01. 12일 이후 출생)만 지원 가능
6. 근무지 :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, 사업소 사무실 및 실외 현장
 - ※ 첨부 2021년 상반기 서울시 공공근로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조
7. 신청방법
 - 신청서 작성시 **반드시 희망하는 사업부서의 사업번호**(첨부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고)를 기재하여야 함
 - ※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
 - ※ 서울시 및 자치구 공공근로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(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됩니다.)
 -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**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** 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신청서(시 사업) 작성 후 접수
 - 구비서류
 - < 필수사항 >
 - ①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(동주민센터 비치)
 -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 (동 주민센터 비치, 본인 및 가족,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)
 -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(동 주민센터 비치,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)
 - ④ 구직등록필증 (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에서 발급)
 - < 선택사항 > : 가점대상 확인 (해당자에 한해 제출)
 - ▷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주여성, 장애인 및 가족 등
 - ▷ 여성가장(세대주) -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
 - ▷ 재산 2억 초과시 대출증명서,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

※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

8. 신청자격

-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
 -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
 -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
 -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, 가족 재산(주택, 토지, 건축물, 자동차 등 재산액) 보유액 합이 2억원 이하인 자

참여배제 대상(접수일 기준)

- ▶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, 실업급여 수급자
- ▶ 가족 합산 재산(주택, 토지, 건축물, 자동차 등 재산액)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
 - ※ 가족의 범위 :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,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
 - ※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
- ▶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%를 초과하는 가구
 - ※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(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)
 - ※ 2020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65% 범위 및 건강보험료 참조
- ▶ 1세대 2인 참여자 (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)
- ▶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(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)
 - ※ 60세이상 고령자,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,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
- ▶ 신청서, 정보제공 동의서,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,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- ▶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
- ▶ 아동·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, 「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아동복지법」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
- ▶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
- ▶ 정부 훈령·예규·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
- ▶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·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

※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5% 범위 및 건강보험료

(단위 : 원/월)

가구원 수	소득기준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			노인 장기요양보험료
	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	혼합	
1인	2,100,000	70,702	29,273		
2인	1,945,000	65,018	21,217	65,642	○
3인	2,516,000	84,251	55,836	85,130	○
4인	3,087,000	103,092	93,344	104,000	○
5인	3,658,000	122,857	111,837	124,059	○
6인	4,229,000	142,519	138,781	144,298	○
7인	4,803,000	160,546	160,865	162,883	○
8인	5,377,000	180,237	185,031	183,101	○
9인	5,952,000	201,381	211,011	204,864	○
10인	6,526,000	220,167	233,499	224,298	○

☞ 단,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% 기준

9. 선발기준 : 사업별 자격(우대)조건과 재산보유액, 가구소득(건강보험료 부과액),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, 세대주, 부양가족 수, 취업취약계층, 사업별 고려요소 등 ⇒ **개별 사업부서에서 선발자 결정**

10. 임금 및 근로조건

- 임금 : 1일 53,000원, 부대경비 5,000원 별도 지급 ※ 6시간 근무 기준
- 근로조건 : 1일 6시간 이내, 주5일 근무원칙, 주·연차수당 지급
 - ※ 사업별 특성상 주말,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(단, 주말, 공휴일 근무시 주중 대체 휴무)
- 4대보험 가입 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

11. 합격자 발표 : 2020. 12. 31(화)

※ **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함**

☞ 공공근로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.
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(휴대폰 및 유선전화) 기재

12. 문의사항

-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
- 서울시청 일자리정책담당관 (2133-5472)

- 붙임 1.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,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
2. 2021년 상반기 부서별 모집내역 1부. 끝.